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5. 28
- 다. 상정일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자 : 내무과장 이수철
- 나. 개정사유
 - 조문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1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목적)"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5조 (근무상한연령) 중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를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한다"로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65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목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안 제1조)
- 조의 제목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를 "경노무고 용원(사환)에 한한다"로 개정 (안 제5조)
-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를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한다"로 개정 (안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으로 하고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를 "군인사위원회"로 하며 "그 인사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 회의"로 개정 (안 제10조 제1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목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를 "경노무 고용원(사환)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를 "근무상한연령은 58세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를 "화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로 하고 "산하기관 단위로"를 "산하기관을"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으로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를 "군 인사위원회"로 하고 "그 인사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신규채용) ①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p>	<p>제3조 (신규임용) ① <u>경노무고용원(사환)에 한한다.</u></p>
<p>제4조의 2 (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고용직 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삭제)</p>
<p>제5조 (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 (근무상한연령) ① <u>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한다.</u></p>
<p>제9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u>화순군지방공무</u></p>	<p>제9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현행과 같음) ② <u>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본청, 사업소 및 선하기관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u>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 임용할 수 있다.</p> <p>제10조 (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견을 요구하고, <u>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u>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p> <p>(별표) <u>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직종 (직명)</td> <td style="width: 50%;">근무상한연령</td> </tr> <tr> <td>경노무고용원 (사환)</td> <td style="text-align: center;">58세</td> </tr> </table>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경노무고용원 (사환)	58세	<p><u>행규칙 제2조</u> <u>산하기관을</u> </p> <p>제10조 (징계) ① <u>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u> <u>군 인사위원회에</u> <u>인사위원회의</u> </p> <p>(삭제)</p>
직종 (직명)	근무상한연령				
경노무고용원 (사환)	58세				